
Policy and Law Report _Vol.17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2.13.~2.21.) -

February 22, 2023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과제인 ‘케이(K)-클라우드’ 사업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케이(K)-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과제(프로젝트)’ 사업을 통합 공고함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통해 발표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케이(K)-클라우드 추진방안」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것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인 ‘케이-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개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향상된 인공지능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임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62억원(예정)*을 투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3단계(엔피유(NPU) → 저전력팜(PIM) → 극저전력팜(PIM))에 걸쳐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힘 *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및 팜(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 현재 예타 기준 < 케이(K)-클라우드 프로젝트 > 이번에 공고하는 ‘케이-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은 그 중 1단계로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산 엔피유(NPU*)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인터넷 이용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임 * Neural Processing Unit, 딥러닝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고성능·저전력 프로세서 국산 엔피유(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신규)과 기존의 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2023년에 376억원(7개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천억원(잠정)을 투자할 예정임	2023-02-13

부처	내용					일시
	<사업별 예산 및 지원 규모 >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전담기관	공모예산	규모	접수기간
	인공지능반도체팜(Farm) 구축 및 실증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기반 대용량, 고성능 연산이 가능한 상용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센터 구축 및 실증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65.44억원	1개 과제	2월16일 ~3월20일
	인공지능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조성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운영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65.44억원	1개 과제	2월16일 ~3월20일
	인공지능반도체 응용실증지원	서버·엣지용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기반 테스트 서버·제품(폐쇄회로(CCTV), 로봇 등) 구축 및 개발, 인공지능응용서비스 개발·테스트, 검증 등 실증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38.58억원	6개 과제	2월16일 ~3월31일
	고성능 컴퓨팅 지원 (인공지능반도체 트랙)	인공지능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기관 등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25억원	100개 내외	2월16일 ~3월31일
	인공지능 사용 권리(바우처) (인공지능반도체 트랙)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인공지능솔루션을 수요기업이 구매·활용하도록 사용권리 지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100억원	30개 내외	2월16일 ~3월31일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육성 지원 (케이클라우드 트랙)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서비스형 인프라(IaaS) 기업이 협력하여, 지능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6개 과제) 및 교육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대학생·일반인 등 대상, 4개 과제) 개발 지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46.4억원	10개 과제 내외	2월16일 ~3월31일
	공공부문 이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검증 (교육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트랙)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기반 인프라형 서비스 기업이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초·중·고) 개발 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6억원	15개 과제 내외	2월16일 ~3월31일

부처	내용	일시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산업 육성 지원 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일상 및 주요 산업 현장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023년도에 총 2,2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고성장하고 있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산업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플랫폼 개발지원, 인재양성, 기업지원,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선도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 지원) - 국민의 일상생활·경제·산업 분야*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 지원(총 680억원) * 지역명소, 의료, 교육, 국방, 보훈, 친환경 선박, 산업단지, 기기·장치(디바이스) 등 -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재난안전관리 체계(충청권) 신규 구축(신규 80억원) ② (인재양성)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750명, 29억원)과 확장가상세계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연계한 석·박사 과정생 중심의 확장가상세계 랩(12개소, 28억원) - 청년 확장가상세계 개발자·창작자를 육성하는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300명, 75억원) - 확장가상세계융합대학원(5개소, 35억원) 운영 등을 통해 확장가상세계 전문인재를 양성(총 167억원) ③ (전문기업 지원 및 육성) -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확장가상세계 거점 운영 (판교·동북권, 80억원) - 한국가상현실·증강현실콤플렉스(상암), 지역확장현실(XR)제작거점센터(13개소),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익산), 확장현실장치(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구미),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빌리지(부산) 등의 확장가상세계 특화시설을 연계하여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및 디바이스 개발 실증과 테스트 등을 지원 (총 247억원) - 세계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확장가상세계 기업에 대한 맞춤형(상담,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등) 지원 (119억원) -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약 4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기금을 조성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④ (기술개발) - 확장가상세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휴먼, 콘텐츠 제작 등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16개 신규과제), 3차원 입체사진(홀로그램) 실시간 획득·생성, 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술 개발 및 관련 사업화 실증을 지원하는 3차원 입체사진(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 XR인터페이스 핵심 원천기술 개발 등에 총 615억원 투입	2023-02-17

부처	내용	일시										
	⑤ (저변확대) - 초·중·고 실감교육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현장 체험교육 운영 확대와 확장가상세계 개발자 경진대회, K-해커톤 대회, 코리아 확장가상세계 페스티벌(KMF)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행사들을 연중 개최하여 확장가상세계 확산을 지원하고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강원)과 연계한 확장가상세계 홍보·전시체험관 조성 등을 통해 확장가상세계 체험 및 활용 기회 확대 (총 100억원) ⑥ (규범체계 정립) - 확장가상세계산업 진흥 관련 법령 제정,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확산, 확장가상세계 자율규제 시범운영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 환경 조성											
산업통상 자원부	• 정부-업계 공동으로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23년 통상 10대 과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재로 '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한 바, 이번 포럼에서는 주요 업종 협·단체, 수출·투자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올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을 전망하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논의함 * 정부-산업계 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3년 구성된 통상 분야 민관협업 채널 < 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23년 통상 10대 과제」 > <table><tr><th>정책 방향</th><th>'23년 통상 10대 과제</th></tr><tr><td>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td><td>과제① 美·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 적극 대응 과제② 美·中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구체화 과제③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td></tr><tr><td>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td><td>과제④ EPA 방식의 新FTA 신속 추진 과제⑤ 신흥경제권 국가 중심으로 TIPF 본격 확대</td></tr><tr><td>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통상 역할 강화</td><td>과제⑥ E新중동 붐 조성 + 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 과제⑦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과제⑧ 외투 유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td></tr><tr><td>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td><td>과제⑨ 지역별·이슈별 통상규범 주도 과제⑩ ODA 고도화 : 공급망·그린·기술</td></tr></table>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년 통상환경) 최근 美·中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경제성장률('22→'23년, IMF) : (세계)3.4%→2.9%, (美)2.0%→1.4%, (EU)3.5%→0.7% - 이에 더해 점차 본격화되는 디지털·그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 간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정책 방향	'23년 통상 10대 과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과제① 美·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 적극 대응 과제② 美·中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구체화 과제③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과제④ EPA 방식의 新FTA 신속 추진 과제⑤ 신흥경제권 국가 중심으로 TIPF 본격 확대	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통상 역할 강화	과제⑥ E新중동 붐 조성 + 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 과제⑦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과제⑧ 외투 유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과제⑨ 지역별·이슈별 통상규범 주도 과제⑩ ODA 고도화 : 공급망·그린·기술	2023-02-13
정책 방향	'23년 통상 10대 과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과제① 美·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 적극 대응 과제② 美·中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구체화 과제③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과제④ EPA 방식의 新FTA 신속 추진 과제⑤ 신흥경제권 국가 중심으로 TIPF 본격 확대											
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통상 역할 강화	과제⑥ E新중동 붐 조성 + 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 과제⑦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과제⑧ 외투 유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과제⑨ 지역별·이슈별 통상규범 주도 과제⑩ ODA 고도화 : 공급망·그린·기술											

부처	내용	일시
	② (정책 방향)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 산업부는 '23년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 목표 -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기조하에 10대 통상 과제에 주력할 방침	
	•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함 이날 발표된 「철강산업 발전전략」은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밸류체인에 걸쳐 '30년까지 ①철스크랩(고철) 산업생태계 구축, ②세계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③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④글로벌 수출 3강 달성 등을 목표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원료) 먼저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안정 추진 ② (공정) 제철·제강 공정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 추진 ③ (제품) 고부가재 중심으로의 제품구조 고도화 주력 ④ (수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 추진	2023-02-16
국토교통부	•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금번 안건은 新 일상 분야의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現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음 * 경제성장률('22→'23년, IMF) : (세계)3.4%→2.9%, (美)2.0%→1.4%, (EU)3.5%→0.7%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기술이 융 복합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정부는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함	2023-02-20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 로봇 배송('26년)·드론 배송('27년) 조기 상용화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추진('23~) - AI 기반 전국 당일배송 체계 구축 : 도심 내 MFC 허용('23) -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 :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물류 배송 체계,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구현(~'27) ②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 도심 물류 인프라 구축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 GB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물류정보 통합 관리 및 민간 개방 ③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 ICT 기반 화물차 모니터링 강화 : 화물차 실시간 관제 구축('27) -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교통안전관리구역' 지정 추진	
	• 법정부「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발표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한 바,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됨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월레비를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2억(월평균 약 1.7천만원)의 타워크레인 월레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 - 경찰청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여 63명 송치 (20명 구속) - LH는 건설노조 대상 첫 직접 형사고소(1/19)에 이어 민사조치(손해배상청구)도 2월 중 추진 -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하여 43건의 불법행위 고발 대행	2023-02-21

부처	내용	일시
	②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 채용 강요, 금품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형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을 적용하여 즉시 제재·처벌 - 준법투쟁의 발미가 되는 산업안전규정의 합리적 조정 -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월레비 요구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 정지 ③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 단속체계 상시 운영을 통한 적발률 제고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 통한 신고 독려 등 불법 하도급 관리 강화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직접지급 사업장을 확대 -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위한 편의시설 확충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2.21. 시행)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 신설, 제29조에 제3호 신설 등)	2023-02-21
국토 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2.14. 시행) 부엌·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중 기숙사에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숙사의 공간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가 투기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기숙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 제2호라목)	2023-02-14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2.21. 시행)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등)	2023-02-21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06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 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검사 등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법률 오기를 정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성능검사, 성능점검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안 제16조제4호·제6호·제9호) ② 사용정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 – 사용정지된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개별기준 마련 (위반차수에 관계없이 10만원) ③ 근거 법률 인용 조문 오류 수정 (안 제16조제7호·제8호) ※ 의견 제시기간 :2023/2/15(수)~3/2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로 제출	2023-02-15
국토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직접청구 및 가불금 제도, 정부보장사업 등을 운영 중이나,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상대방 개인정보 등도 청구서에 기입해야 하는 등 청구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하고자함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 등에 가불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파산 등으로 가불금 환수 곤란 시 정부가 보상 중이나, 환수가 불가함에도 보상범위에 반영되지 않은 요건을 추가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사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2023-02-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한편, 정부보장사업은 보상접수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상설 보상조직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보상절차가 전화, 온라인(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등으로 진행되어 지역별 조직의 필요성이 낮아졌으므로 위탁조건을 변경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기사항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직접청구 및 가불금, 정부보장사업 보상청구요건 완화 (안 제7조 및 제20조) -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주소 등 제출하기 힘든 항목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 완화 ②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요건 완화 (안 제10조) - 보험회사 등이 환수할 수 없는 미반환 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요건을 완화 ③ 분담금 관련 권리구제절차 마련 (안 제32조의3) - 분담금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 정부의 결과 통보, 보험회사 등의 분담금 반환 및 정부에 대한 반환청구권 대위행사권 등 마련 ④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요건 변경 (안 제33조의3) - 보분담금 관리기관 변경사항(보험관련 단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2~)을 반영하여 채권정리위원회 위원자격 변경 ⑤ 뺑소니사고 신고 포상금 관련규정 삭제 (안 제33조의17, 제35조의4) - 자배법 개정('21.12)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삭제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 삭제 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기사항 마련 (안 제33조의19)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등 주요사항 등 등기사항을 마련 ⑦ 정부보장사업 보상조직 설치요건 완화 (안 제35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완화하여 변경(시·도, 특별자치도별 상설보상조직 및 인력 확보사항 → 상설 보상조직 및 인력 확보사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2/13(월)~3/2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자동차운행보험과)로 제출	2023-02-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추가 규정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확대 (안 제48조제1항) -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위임 ※ 의견 제시기간 : 2023/2/13(월)~3/2(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투자관리감독과)로 제출	2023-02-13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23.5.16 시행)으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을 위한 기준, 절차 정의 (안 제8조) - 우선 승인의 기준으로 사업전환계획에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할 것 - 우선 승인 방법·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 ※ 의견 제시기간 : 2023/2/17(금)~3/29(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투자관리감독과)로 제출	2023-02-17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유형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기업결합 심사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성 해소에 유효·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건처리와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023-02-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등 (안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및 제3항) -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을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함 -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함 ② 기업결합 심사 시 자진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 (안 제13조의2 신설) - 경쟁제한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대상회사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정방안을 평가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 ③ 전자심판제도 도입 (안 제98조의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 서류를 당사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2023/2/14(화)~3/2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로 제출	2023-02-14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정과제 28번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추가 (안 제16조제2항제14호 신설)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 의견 제시기간 :2023/2/16(목)~3/2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	2023-02-16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인데 현행법 규정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만을 분리선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감사위원회위원 중 여러 명을 분리선임하는 것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보다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안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2023-02-13
정무 위원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86조제3항 단서 신설 등)	2023-02-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6인)」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폐단을 여실히 보여줌.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온라인 중개서비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은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Lock-in 효과 등을 통해 두 세 개의 플랫폼이 지배하는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좋은 상품·서비스는 직접 판매하여 판매점유율을 늘리고 있고,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더 나아가 플랫폼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자사상품은 상품노출 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고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상품 중개행위를 동시에 영위함으로써 상시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제도는 독과점 시장지배를 주되게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법리만으로는 상품·서비스가 방대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EU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을 공포했고 미국 하원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을 마련한 바 있음. 이들 법안에는 플랫폼 이용자수 등을 활용하여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행위와 입점업체 차별행위, 같은 플랫폼 내에서 자사상품과 입점업체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이해충돌 상황 야기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 있음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결제, 광고, 배송 등 서비스를 중개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관련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새로이 창업하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독과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플랫폼과의 데이터 이식과 상호 운용성의 가능성을 차단함 이러한 독과점 지위를 공고히 하는 행위를 깨뜨리고 플랫폼 시장을 경쟁체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식과 멀티호밍(multi-homing) 등을 촉진하고 입점업체와 고객의 선택권을 증진시켜야 함 이에 플랫폼 독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동 법안을 마련함	2023-02-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존재하는 온라인플랫폼 부문에서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핵심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안 제5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플랫폼 서비스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 함 (안 제6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등의 핵심플랫폼서비스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온라인 중개서비스 목록은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함 (안 제7조) ⑤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동일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8조) ⑥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된 정보 및 핵심플랫폼서비스에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의 노출순위를 제3자의 재화 등에 비해 우대하지 아니함 (안 제9조) ⑦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최종이용자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안 제12조) ⑧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안 제13조)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4조)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핵심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핵심플랫폼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불공정한 행위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5조) ⑪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부문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함 (안 제26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특히,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이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함 이에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조)	2023-02-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2인)」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가 선보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제고됨 ‘ChatGPT’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하였음. 이에 개정 방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법 강화”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전송 및 활용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의 규제 방안이라는 방안을 제시받음 실제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공지능·알고리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볼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해당 알고리즘에 시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토록 하고자 함 (안 제39조의11 등)	2023-02-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u>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4인)</u>」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또는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그 활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생체식별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2023-02-20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u>」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도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2021. 4.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핵심협약에 따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현행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2023-02-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행정행위로 인해 ILO 협약 위배 등 국제 분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및 제116조제1항)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3인)」 최근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능적 오류·오작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능적 오류·오작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시정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6 및 제76조제3항제2호의6 신설)	2023-02-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자의 주장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차단조치를 할 수 있는 반면,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가 차단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2023-02-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한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임시조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차단조치를 한 경우에 정보게재자가 삭제된 정보의 복원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권리침해주장자와 정보게재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제도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사전승낙 철회 등의 방법으로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의 차별 지급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금 차별 지급 등을 이유로 사전승낙이 철회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다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 고객 간 거래를 매개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여 사전승낙제도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 환경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승낙 철회의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정하며, 판매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할 때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사전승낙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이용자 보호와 이동통신사가 행하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협정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게 하거나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협정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게 하거나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등)	2023-02-16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3제3항 신설 등)	2023-02-20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를 거부하여 사용료 산정 및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사용료 산정을 위해 열람을 청구한 서류를 이용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열람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07조)	2023-02-21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지의 경우 산업의 발전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한 때에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2023-02-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예외사유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새로운 산업육성 등을 위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변화하는 산업환경의 흐름을 반영하여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 목적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항 단서, 제49조제1항제3호 신설)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의원 등 10인)」 풍력은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 여건상 중요한 재생에너지 자원임. 특히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이용률이 높은 편이어서 발전효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간 제약 없이 밤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조선·철강·해양플랜트 산업과 밀접 연관되어 있어 타워·하부구조물·설계시공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한 장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하지만, 그간 해상풍력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서 질서있는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이를 통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서있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의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구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및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2023-02-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② 해상풍력 보급 ·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 국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양공간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3조) - 사업자는 수산업 기타 해양의 다양한 개발 및 이용, 해양 환경 보전 및 해양 안전 확보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 (안 제3조) ③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 예비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둠 (안 제6조) - 위원회는 해상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 (안 제9조) ④ 예비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 ·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기본설계안을 수립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실시함 (안 제13조) -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및 어업인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안 제14조 및 제15조) - 위원회는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 · 의결을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로 지정함 (안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 (안 제17조) ⑤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발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인 · 허가등의 의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안 제19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안 제20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안 제21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2조) ⑥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28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29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 (안 제30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안 제31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안 제32조 및 제33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안 제3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함 (안 제35조) ⑦ 법률의 경과조치(부칙) -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지구 또는 제16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안 부칙 제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 시행 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입지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함 (안 부칙 제3조) - 이 법 공포 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됨 (안 부칙 제4조) -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징수하는 해상풍력 관련 점·사용료의 일부를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개정함 (안 부칙 제5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의원 등 12인)」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의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의 목적을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에 기반한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확대와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②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등에 대한 정의를 둬 (안 제2조) ③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④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둬 (안 제6조) ⑤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해상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둬 (안 제9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며, 이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기본설계안을 수립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2023-02-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안 제14조) ⑧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안 제15조 및 제16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7조)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 (안 제18조)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안 제20조) ⑫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안 제21조) ⑬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안 제22조) ⑭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역이용협의등의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안 제23조) ⑮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안 제24조) ⑯ 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와 예비지구·발전지구 외의 해상풍력사업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0조 및 제31조)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화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중국 등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해외 주얼리 유명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 고급 주얼리시장의 약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주얼리산업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잃고 외국에 비해 침체되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음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주얼리산업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주얼리가 1990년까지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등 주얼리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왜곡되는 현상이 반복·심화되어 왔고,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이 새로운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공공연하게 만연되어 있고,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 등의 유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등 주얼리 시장의 불법적인 거래와 이로 인한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태여서 고부가가치 주얼리 제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원화 가치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어느 나라도 외화를 빌려주려 하지 않을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28억불을 수출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귀금속·보석은 사치 소비품만이 아니라 국경이 없는 화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약 6백년 가까운 다이아몬드 연마와 유통 역사를 가진 선진 유럽의 경우 주얼리 산업을 성장동력의 주력산업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보석 등의 유통과 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벨기에 “엔트워프 시”에는 다이아몬드 산업을 관리·육성하는 부시장 직위가 따로 있음을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음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량 금 또는 합성보석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극심하고 이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해외 명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얼리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등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 따라 특정비금융사업인 우리나라 주얼리소매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잘못된 제도유지에 기인한 산업의 음성화로 인해 아직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류 상품(K-JEWELRY)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주얼리분야 관계법이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에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더불어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얼리의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5조) ④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안 제6조) ⑤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결격사유, 주얼리소매사업자의 지위 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며 주얼리 제조·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 대체소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⑨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를 감면할 수 있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전문 보세 판매장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며,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 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 (안 제21조 및 제22조)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 · 산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 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소매업자의 등록, 주얼리소매업자의 사업의 개시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 「<u>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u>」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전원개발사업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으나,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발전사업을 양도 · 양수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기위원회의 양도 · 양수 인가를 받아 신고하면 전원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전원개발사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처리 기한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안 제6조의5 신설)	2023-02-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보건복지 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기준으로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준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이 포함되지 않아, 2021년 7월 기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한 실정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에서도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를 갖추 필요 있음 이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2023-02-14
환경노동 위원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수탁 기준의 세부사항만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령에서는 기준의 준수 주체이자 의무 부과 범위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그 업종·규모나 폐기물 배출량 등에 따라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지에서 오염 침출수 등이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가동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함	2023-02-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러나 해당 시설이 경매·환가·매각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수된 이후 인수인이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결부된 권리·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 역시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 이에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적 공백 및 하자를 보완하고,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폐기물 처리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안 제15조의2제3항·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②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는 사업자가 폐기물 감량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그쳐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관련된 종전의 규정을 정비함 (안 제17조제7항·제68조제2항제2호) ③ 종전의 사업자가 사용종료·폐쇄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인수한 자도 해당 시설에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 (안 제50조제5항)	
	• 「<u>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2인)</u>」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통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후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환경부장관이 기존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업종별 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임 그런데 배출시설등의 신설·증설·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여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빈도가 높아, 새로운 변경허가를 받을 때마다 변경허가일이 변경됨. 이로 인해 현행법상 재검토의 기산일이 매번 새로운 변경허가에 따라 연기되므로 사실상 허가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없어 제도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3-02-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신설·증설·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최초 허가일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함 (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구직자에게 AI를 활용한다는 안내 혹은 공지없이 AI 평가로 진행하거나, 일반 면접으로 진행하던 중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고 AI 면접 전형으로 변경하는 등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AI의 학습 알고리즘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편향성과 차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그 기술의 점검과 개선없이 전적으로 AI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8조의2 신설)	2023-02-17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매립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2023-02-2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또한,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50 ~ 10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감면에 필요한 매출액 정보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과 감면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한편,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자료를 보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함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특히 감면을 위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재산 자료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6조제5항·제11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현재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과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와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운송수단)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수단을 중개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해당 사업 외에 가맹사업 등의 다른 유형의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두 종류 이상의 플랫폼사업을 할 수 있음), 특별한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콜 몰아주기 등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플랫폼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여객배정과 정보제공 등에서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플랫폼 택시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2제2항·제3항, 제49조의12제3항 및 제49조의20 신설)	2023-02-1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02-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런데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린스틸(green steel)과 같은 저탄소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하며 기후 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42조 및 제99조, 제100조제4호 삭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21인)」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13개 지정)에 대하여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부품은 부품제조사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특히 배터리 구성품 중 하나인 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 결함조사를 할 때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1조제14항 신설)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 결함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3조제4항)	2023-02-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6인)</u>」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민간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여건상 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성장 사업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부지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민간 시행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의 처분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9항제2호의2 신설)	2023-02-17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2/24(금) 14:00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안건 처리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2/20(월)	국회도서관 웹진 제58호 발간	
	2/2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5호 발간 -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	
	2/22(수)	「World & Law」 2023-4호 발간 - 인공지능이 내 면접관이라고?	
	2/23(목)	「현안, 외국에선?」 제54호 발간 -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	
예산정책처	2/20(월)	「NABO 경제동향」 2월호 발간 - 2022년 수출입 특징 및 평가	
	2/23(목)	2023년 「예산춘추」 첫 번째(Vol.69) 발간	
	2/24(금)	「NABO Focus」 제57호 발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개선방안	
미래연구원	2/20(월)	「Futures Brief」 제23-03호 발간 -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별첨1] 제403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2/20(월) 10:00	제1법안소위	- 고유법 심사
	2/21(화) 10:00	제1법안소위	- 고유법 심사
	2/22(수) 14:00	제2법안소위	- 타위법 심사
	2/23(목) 14:00	전체회의	- 고유법 의결, 타위법 심사
정무위	2/20(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업무보고 (비금융)
	2/21(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업무보고 (금융)
기재위	2/21(화) 10:00	전체회의	- 공청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 한국은행 등 업무보고
	2/22(수) 10:00	전체회의	-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
교육위	2/21(화) 10: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2/22(수) 10: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국방위	2/21(화) 14: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2/22(수) 14: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행안위	2/21(화) 10:00	법안심사2소위	- 법안 심사
	2/22(수) 10:00	법안심사1소위	- 법안 심사
	2/24(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문체위	2/20(월) 14:00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 심사
	2/21(화) 10:00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 심사
	2/22(수) 14: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업무보고
농해수위	2/20(월) 10: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농식품부 소관), 업무보고
	2/21(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해수부 소관), 업무보고
산자중기위	2/20(월) 10:00	산업특허소위	- 법안 심사
	2/21(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2/24(금) 10:00	전체회의	- 공정회 (제정법)
복지위	2/24(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공정회
환노위	2/21(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를 건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및 후속조치 채택의 건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국토위	2/24(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정보위	2/22(수) 10:00	전체회의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업무보고
	2/22(수) 14:00	전체회의	- 업무보고
여가위	2/23(목) 14:3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업무보고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20(월) 09:30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윤창현 의원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2/20(월) 10:10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김병욱·김성환·민병덕· 민홍철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2/20(월) 13:30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시대 IT서비스가 이끈다」 국회세미나	이정문 의원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2/20(월) 14:00	건설산업 OSC활성화방안 토론회	엄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2/21(화) 14:00	디지털 소비자문제 이대로 둘 건가?	하영제 의원실,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의원회관 5간담회실
2/15(수) 14:00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정책의 해법: 노인주치의제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2/22(수) 10:00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유경준 의원실,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센터
2/22(수) 10:00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	권명호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2/22(수) 10:00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홍영표·강득구·김교흥· 김민철·김병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22(수) 10:00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준호·김영선·이달곤· 강기윤·최형두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실
2/22(수) 14:00	에너지 부분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토론회	김정호·서삼석 의원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2/22(수) 14:40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국세 지역환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희재 의원실,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2/23(목) 08:00	제3회 한중 사회·문화 갈등의 상호 인식과 발전적 전망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홍영표·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2/23(목) 14:00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창립기념식	양향자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2/23(목) 14:00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	김성원·윤한홍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2/23(목) 15:00	제3회 과학기술강국포럼 토론회	조승래·김영식 의원실, 과학기술강국포럼	국회도서관 강당
2/24(금) 14:30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의원회관 2세미나실
2/27(월) 14:00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어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73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2/16(목)	「현안, 외국에선?」 제53호 발간 -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	
입법조사처	2/16(목)	「이슈와 논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및 향후 과제	
	2/17(금)	「이슈와 논점」 -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	
미래연구원	2/17(금)	「Futures Brief」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제23-03호>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13(월) 08:00	<u>왜 한국에겐 반도체 산업인가? 무엇을 해야하나?</u>	양향자·박성민·조응천, 조정훈·최형두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2/13(월) 09:30	<u>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u>	노웅래·박대수 의원실, 환경부	의원회관 1소회의실
2/15(수) 14:00	<u>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u>	최혜영 의원실, 안성시	의원회관 1소회의실
2/15(수) 15:00	<u>웹툰작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u>	류호정·김승수 의원실, 한국만화가협회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2/16(목) 09:30	<u>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u>	민홍철·임호선 의원실, 국토교통부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2/17(금) 10:00	<u>시민단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u>	서범수 의원실, 여의도연구원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2/17(금) 14:00	<u>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u>	민병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의원회관 1간담회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